

# 일본 유니트케어의 도입배경과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본 신형 특별양호노인홈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nit-care System in Japan

- Regarding with the New-Model of Welfare Facilities for Aged Japan -

이현정\* / Lee, Hyunjung

민병호\*\* / Min, Byungho

권순정\*\*\* / Kwon, Soonj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our direc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human well-being. The functional and architectural changes of Japanese elderly care facilities have been analysed in order to predict changes in Korean welfare facilities. In Japan, Unit-care and private rooms are essential elements after reforming welfare facilities for aged. This study proposes components of unit-care through the analysis of 20 facilities for the aged. A unit is basically consist of private rooms, rest room, public living area, kitchen, health care service station, and bath room. Besides, smoking room, tea room, public terrace, guest room, court yard, and so on can be added. A unit can be connected with other unit by semi-public spaces or can be independently organized. This relationship has been classified into 2 types; Open unit type and Separated unit type.

키워드 : 유니트케어, 노인시설, 일본노인복지, 신형특별양호노인홈

Keywords : Unitcare, Elderly Care Facility,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다섯 명 중 한명은 65세 이상, 열 명 중 한명은 75세 이상' 2006년의 일본의 모습이다. 일본 총무성은 인구 중 65세 이상이 2640만 명이라고 2006년 9월 발표했다. 이는 2005년보다 83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 달한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일본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현재는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 기준 8.7%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최고로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다양한 노인주거가 공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요양시설

등 다양한 수발시설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는 노인시설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에서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개발수익이 기대되는 대규모 개발 형식이거나 전원생활이 강조된 휴양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입주율의 저조로 이어져서 경영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복지 선진국들은 가능한 노인들이 살아온 개인주택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설입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노인이 살아온 기존의 지연사회(地緣社會)에 지속적으로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개발계획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선진사례라고 판단되고, 한국의 실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흐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중 소규모 생활단위케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1) 중앙일보, 한국의 고령화 속도 더 빠른데..., 2006.09.19

2)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동경부 23 구내 시설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06.2.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실시될 수발보험정책에 대비하고자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후 나타나게 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책과 그 일환으로 계획된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소규모생활단위유니트의 공간적 요구사항과 공간들의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요양시설의 소규모 생활 단위 계획 시 적용될 수 있는 공간구성형태와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흐름,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의 개요, 그리고 유니트케어 방식의 도입배경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의 조사대상 사례수집과 내용조사를 위해 일본전국신형특양추진협의회(日本全國新型特養推進協議會)3)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 중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공간구성에 대한 도면을 구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선정된 조사대상시설은 18개소이다.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팀과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소규모생활단위유니트”의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소규모생활단위의 공간구성 방식과 구성요소, 유니트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유니트간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조사대상시설들이 각각의 분석사항에 대한 특징을 정의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시설의 현황

#### (1) 개호보험 도입 이전의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주었다. 1973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 급증과 보험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문제해결은 위해 1982년 노인보건법제정을 통해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해 12월에 골드플랜(gold plan)을 수립하였다. 골드플랜은 1999년까지 10년간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으나 달성도가 떨어져 1994년 골드플랜을 보완하여 신골드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개호<sup>4)</sup>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 공급시스템 도입, 고령자 자신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적인 서비스 제공, 다양하고 건전한 경쟁 시스템 도입, 개호비용을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시스템, 시설재택을 통한 공평한 비용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개호보험 제도

개호보험은 지방자치 중심으로 보건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정촌(市町村)에 주소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와 44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크게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된다. 재택서비스는 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통소개호, 통소사회복귀요법,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복지용구대여, 주택개호지원 등이 있으며 시설서비스는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등이 있다. 개호보험 적용 시 이용자의 부담은 개호 비용의 10%를 기본으로 하고 월 부담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sup>5)</sup>

<표 1> 개호보험의 등급과 내용(장병원, 2003)

구분	상태	개호필요인정 등 기준시간 (1일 기준)	재택서비스 지급한도액 (1개월)
지원필요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25분 이상~30분미만	61,500엔
개호필요1	부분적 개호를 필요로 한다.	30분 이상~50분미만	165,800엔
개호필요2	경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	50분 이상~70분미만	194,800엔
개호필요3	중고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	70분 이상~90분미만	267,500엔
개호필요4	중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	90분 이상~110분미만	306,000엔
개호필요5	최종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	110분 이상	358,300엔

#### (3)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

개호보험의 시행되고 일본노인시설의 변화는 크게 재가보호시설의 확충과, 규모가 작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개인실의 설치가 늘어나고 유니트케어(unit care)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를 바꾸고 있다. 재가시설 역시 험헬퍼, 주간보호, 단기보호, 일시거주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 재가요양지원시설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노인시설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기능서비스 공급시설의 필요성 대두, ② 노인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역사회 거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 ③ 재가보호의 강화로 인한 시설 기능의 변화, ④ 개인실의 증가 등이다. 고령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다양한 개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로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설공급의

3) 2004년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의 보다 나은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신형특별양호노인홈 시설 간의 협력, 체육, 협조를 위한 추진 단체이며 현재 150 시설이 참가하고 있다.

4) 개호(介護): 우리나라의 수발, 간병, 간호 등의 의미를 갖는 복지 전문용 어로써 영어의 care에 해당된다.

5) 이특구·김석준, 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2006.3.

필요성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원칙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가보호와 개호예방이 강조되면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중증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간호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며 시설의 역할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질적인 변화 요구에 의해 요양실의 형태는 다인실에서 개인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요양실 당 입소인원은 4인실과 1인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인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4인실은 감소하고 있다. 개호노인복지시설 요양실 당 정원을 살펴보면 1인실은 2001년 전체정원의 30.7%에서 2003년 35.3%로 5%가량 증가했으며, 4인실은 47.2%에서 44.0%로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케어매니지먼트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늘어난 것이며,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설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sup>

## 2.2. 신형특별양호노인홈과 유니트케어

### (1)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의 정의

후생노동성은 종래의 특별양호노인홈(종래형특별양호노인홈)의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하여 전개인실, 유니트케어를 기본으로 하는 신형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한 협의를 2002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주식회사 등)는 운영할 수 없다.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은 전개인실로 이루어진 10명 이하의 소규모 생활단위 구성으로 된 유니트케어를 채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형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구조, 설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특별양호노인홈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후생성령 제 46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신형특별양호노인홈에 관한 시책이 본격적으로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다.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은 종래형특별양호노인홈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다양한 생활공간 확보 등 거주환경을 중시한 공간계획을 한다. 개인적 공간으로부터 공공적 공간까지 다양한 생활공간을 중층적으로 확보하며, 개인실 근처에 공용공간을 마련해 유니트케어를 실현한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확보의 예는 <표 2> 와 같다.

<표 2> 생활공간의 구분

공간분류		내용
개인공간 (unit)	개인적공간 (요양실)	입주자 개인의 소유물반입, 관리공간
	준개인적공간	개인실 근처에 위치, 소수의 입주자가 식사나 담화를 하는 공간
공용공간	준공용적공간	다수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요법 등의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공간
	공용적공간	지역주민에게도 열려 입주자와 지역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

② 전실 개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수납 및 세면설비공간이 포함된 개인실의 넓이는 약 13m<sup>2</sup> 정도로 하며, 여기에 화장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는 개인실 내에 자신이 사용하던 가구 등을 반입할 수 있으며 부부는 2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유니트케어로 한다. 10명 이내의 생활단위로 하는 유니트케어를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조리, 식사, 담화 등을 통해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니트마다 공용스페이스를 마련한다. 개인실, 유니트케어를 도입함으로써 정양실이나 면회실 등이 불필요해지며 이를 활용하여 복도 폭을 넓힐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양실은 중앙의 공동생활실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니트는 다시 시설 중앙부의 공동이용시설(치료실, 관리실, 공동목욕탕, 중정 등)을 중심으로 계획된다.

신형특별양호노인홈 관련지침에서는 유니트를 소수의 요양실과 공동생활실에 의해서 일체적으로 구성되는 단위의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유니트는 요양실, 공동생활실, 세면설비, 화장실, 욕실, 의무실, 복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상세내용을 가진다.

<표 3> 신형특별양호노인홈 관련지침(일본 후생노동성 노건국)

유니트구성요소	상세내용
요양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숙한 가구를 반입할 수 있는 개인실</li> <li>· 정원: 1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2인 가능</li> <li>· 공동생활실에 근접 배치</li> <li>· 하나님의 유니트 정원은 10실 이하</li> <li>· 비단면적: 13.2m<sup>2</sup>, 2인 거주시 21.3m<sup>2</sup></li> <li>· 요양실 내부에는 부자 혹은 이를 대신하는 설비 마련</li> </ul>
공동생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에서 거실에 상당하는 공간</li> <li>· 공동생활에 방해 없는 이동통로</li> <li>· 해당 유니트 전원의 식사와 담화를 위한 비품 구비</li> <li>· 활동의 이동에 지장 없는 통로</li> <li>· 비단면적: 2m<sup>2</sup> x (해당 유니트의 입주정원) 이상</li> </ul>
세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실 내에 마련 혹은 공동생활실마다 적정수 설치</li> <li>· 요양간호자가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할 것</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실 내에 마련 혹은 공동생활실마다 적정수 설치</li> <li>· 부자 혹은 이를 대신하는 설비 마련</li> </ul>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간호자의 입욕에 적절한 것으로 할 것</li> </ul>
의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소로 할 것</li> <li>· 입주자의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갖출 것</li> <li>· 필요에 따라 임상설비를 갖출 것</li> </ul>
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폭: 1.5m 이상, 다만 중복도는 1.8m 이상</li> </ul>

### (2) 유니트케어의 도입배경 및 정의

유니트케어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극히 보통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이념에서 출발하였다. 보통생활이란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이 살아 각각의 생활리듬에 따라서 영위되는 생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타인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을 시설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일과를 마련하지 않

6)이특구·김석준, 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2006.3.

으며 입주자끼리의 인간관계를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실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동생활실은 소인원의 입주자가 교류하고, 일상의 생활들이 일어나는 장소로써 주택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개호직원은 주로 공동생활실에서 입주자와의 교류를 도모하면서 각 개인의 심신의 상황, 생활습관, 개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입주자들끼리의 교류를 지원한다. 6인실의 특별양호노인홈 입소자들이 취하는 행위 조사 결과, 70% 이상이 동실자에 대해 등 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sup>7)</sup> 이에 반해, 다인실에서 개인실로 리노베이션된 시설의 재건축 전, 후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입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만들고, 침대의 제제율이 감소하였으며, 공동생활실의 체재율이 증가하여 타인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개호직원도 요양실이나

복도의 체재시간이 감소하고 공동생활실에서의 체재시간이 증가하였다. 개인실의 설치와 유니트케어를 통해 입소자들의 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스태프의 역할은 신체시중 중심의 케어로부터 여가 및 교류를 도모하는 등의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sup>8)</sup>

유니트케어는 주택에 가까운 거주환경에서 주택에서의 생활에 가까운 일상생활 케어를 실시한다. 즉, 생활단위와 개호단위를 일치시켜, 입주자들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며, 각 유니트의 입주자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조사대상시설의 개요

조사대상지는 일본전국신형특양추진협의회의 홈페이지를 통

<표 4> 조사대상시설 개요

시설개요 및 특징	평면이미지	시설개요 및 특징	평면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ふれあい(후레이아이)</li> <li>소재지: 近江八幡市</li> <li>위치: 중소도시 중심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단기입소(20),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li> <li>준공연도: 2004</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식 정원의 중정</li> <li>- 전통적인 일본식 주거형식, 형태</li> <li>- 공동생활실: 달걀과 선술집코너/ 유희공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土浦晴山苑(초치우라 하레이마원)</li> <li>소재지: 茨城県土浦市</li> <li>위치: 중소도시 중심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데이서비스,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li> <li>준공연도: 2005</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티 구릉지역에 위치</li> <li>- 가정적인 분위기 안에서의 개호</li> <li>- 시설 주변의 풍부한 자연경관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んくもりの里あおえ (메구모리노리아오에)</li> <li>소재지: 岡山市</li> <li>위치: 중소도시 중심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단기입소(13), 데이서비스(40),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li> <li>준공연도: 2004</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는 프로그램 제공</li> <li>- man-to-man 대응에 용이한 거주형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衣笠ホーム(키하에가사호)</li> <li>소재지: 神奈川県横須賀市</li> <li>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100), 단기입소시설(10),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li> <li>준공연도: 2006</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기본 서비스: 식사, 배설, 이동, 입욕</li> <li>- 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농원: 직접 수확 가능/ 자연이 풍부한 산책로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慶和荘(케이호조)</li> <li>소재지: 山梨県富士吉田市</li> <li>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60), 단기입소(10), 데이서비스(40)</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준공연도: 2006</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지산조망 생활환경, 풍부한 자연환경</li> <li>- 휠체어를 타고도 산책 할 수 있는 산책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おおぞら(오오조라)</li> <li>소재지: 函館市</li> <li>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데이서비스센터(40), 단기입소시설(10)</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준공연도: 2005</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자들의 자립적인 생활 지원</li> <li>- 타인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清心苑(케이신엔)</li> <li>소재지: 大垣市</li> <li>위치: 대도시 중심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80), 노인단기보호(20)</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준공연도: 2005</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공간에 다양한 조경계획</li> <li>- 각각 다른 형태의 공동생활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ピハーラ十條(비하라 쿠조우)</li> <li>소재지: 京都市南區</li> <li>위치: 대도시 중심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100), 단기보호(8)</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li> <li>준공연도: 2006</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분명한 구별</li> <li>- 이용자의 기족을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チューリップ(츄리프)</li> <li>소재지: 長崎県佐世保市</li> <li>위치: 대도시 외곽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데이서비스센터(25), 단기입소시설(10)</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준공연도: 2004</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지로 둘러싸인 위치</li> <li>- 입주자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안뜰</li> <li>- 판내 난로가 설치된 휴게공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명: ソルメゾン(Sol Maison)</li> <li>소재지: 大阪府堺市東區</li> <li>위치: 중소도시 도심지역</li> <li>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100), 데이서비스센터,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준공연도: 2005</li> <li>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돌과 나무마감을 통한 따스한 느낌 표현</li> <li>- 넓은 회랑과 곳곳에 배치된 아트리움</li> <li>- 테라스와 베란다로 개방된 개인실</li> </ul> </li> </ul>	

<표 4> 조사대상시설 개요

시설개요 및 특징	평면이미지	시설개요 및 특징	평면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花ハウス(하나하우스)</li> <li>• 소재지: 川崎市多摩區</li> <li>• 위치: 중소도시 중심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120),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li> <li>• 준공연도: 2005</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외부의 우드데크 설치, 조망과 일광</li> <li>-간접조명, 목재재료를 이용-&gt;일본식분위기</li> <li>-각 유니트마다 다른 색의 구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いなほの郷(이나호노쿄우)</li> <li>• 소재지: 新潟県新潟市</li> <li>• 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80), 단기입소(20),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 준공연도: 2005</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적인 생활공간 목표</li> <li>-지역주민과의 열린 개호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ローズガーデン(로즈가든)</li> <li>• 소재지: 大阪府泉大津市</li> <li>• 위치: 중소도시 도심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65), 단기입소(5), 데이서비스센터(20)</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li> <li>• 준공연도: 2005</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관 베리어프리 공간</li> <li>-이동동선의 기능성을 고려한 복도, 엘리베이터 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いちご(이찌고)</li> <li>• 소재지: 福岡県三潴郡</li> <li>• 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단기입소(10), 데이서비스(20)</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li> <li>• 준공연도: 2004</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실의 화실과 44실의 양실</li> <li>-침대 이외의 기구는 개인기구 반입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ふるる(후루루)</li> <li>• 소재지: 大阪府豐中市</li> <li>• 위치: 중소도시 중심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90), 단기입소시설(10),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3층</li> <li>• 준공연도: 2004</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연회를 위한 공간과 지역교류스페이스</li> <li>-옥상정원의 잔디공간을 통해 자연만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明豊苑(메이진엔)</li> <li>• 소재지: 千葉縣松戸市</li> <li>• 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70), 단기보호(10), 데이서비스(35)</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 준공연도: 2005</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개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li> <li>-유니트와 개설이외에 지역교류스페이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のぞみ(노조미)</li> <li>• 소재지: 愛知県日進市</li> <li>• 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50), 단기입소(10), 데이서비스(20)</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li> <li>• 준공연도: 2003</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의 모임을 위한 교류공간</li> <li>-식당은 외부의 안뜰과 접해 외기를 받고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ボブル(포풀라)</li> <li>• 소재지: 大阪府池田市</li> <li>• 위치: 중소도시 외곽지역</li> <li>• 기능 및 규모: 특별양호노인홈(100), 단기보호(10), 데이서비스(30)</li> <li>•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li> <li>• 준공연도: 2005</li> <li>• 일반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폭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안전확보</li> <li>-호텔과 같은 로비, 영화감상실, 가족연회실</li> <li>-계절을 즐길 수 있는 전망 있는 옥상정원</li> </ul> </li> </ul>	

해 수집하였으며, 총 18개 사례의 소재지, 위치, 규모, 준공연도, 일반적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표 4>.

## 4. 유니트케어의 건축적 특징

### 4.1. 조사시설의 일반적 특징

2002년 계획이 시작된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은 2004년 이후 그 체계가 정립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신형특양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105개소에 달하고 있다.

시설의 입지, 위치는 전원지역보다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의 중심이나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개념이 지역밀착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은 단기입소시설, 데이서비스시설, 지역교류 스페이스와 같은 다기능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지역의 주민과 함께 나누어 이용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는 50인 이상에서 120인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

며, 규모에 상관없이 유니트의 단위는 보통 1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6~9인 까지의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유니트의 구성인원만 지켜진다면 그 시설의 규모는 여전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요양실은 18개 시설 평균 16m<sup>2</sup>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련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13.2m<sup>2</sup>에 상향하는 크기로 기준보다는 더 넓은 공간이 선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유니트는 10인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270m<sup>2</sup> 정도의 크기이다. 유니트 전체 공간면적에서 개인실의 면적을 제외하면 공유공간으로 대략 110m<sup>2</sup>의 공간이 계획되고 있으며, 공용생활실 및 욕실 등의 기타부대시설의 1인당 평균면적은 11m<sup>2</sup>정도이다<표 5>.

7) 医療經濟研究機構, 介護保険施設における個室化とユニットケアに関する研究報告書, 2001.

8) 医療經濟研究機構, 普及期における介護保険施設の個室化とユニットケアに関する研究報告書, 2002.

&lt;표 5&gt;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의 시설내용

	ふれあい (후레이아)	土浦晴山苑 (초치우마 하례야마원)	ぬくもりの里 あおえ(메구모리 노 리 아오에)	衣笠ホーム (키메가사홈)	慶和荘 (케이오소우)	おおぞら (오오조라)	清心苑 (케이신엔)	ビバーラ 十條 (바바리죽조우)	チューリップ (츄리프)
정원	50	50	50	100	60	50	80	100	50
유니트구성인원	10	10	7~9	9~10	10	10	10	8,10	6,9,10
유니트	5	5	8	12	6	5	8	12	6
요양실면적(m <sup>2</sup> )	15.7	14.4	15.6	16	15.6	16	17~23	16.3	16.6
유니트면적(m <sup>2</sup> )	280	266	267	260	275	250	311	230	240
1인당 공용공간 면적(m <sup>2</sup> )	12.3	12.2	11	10	12	9	11	7.4	9
	ソルメゾン (sol Maison)	花ハウス (하나하우스)	いなほの郷 (이나호노교우)	ローズガーデン (로즈가든)	いちご (이찌고)	ふるる (후루루)	明豔苑 (메이진엔)	のぞみ (노조미)	ボプラ (포풀라)
정원	100	120	80	65	50	90	70	50	100
유니트구성인원	10	10	10	7,8,10	10	10	10	8~11	10
유니트	10	12	8	7	5	9	7	5	10
요양실면적(m <sup>2</sup> )	18	17	15.3	14.4	16.3	15.5	14.5	16.3	14.4
유니트면적(m <sup>2</sup> )	340	260	270	230	290	270	315	262	
1인당 공용공간 면적(m <sup>2</sup> )	16	9	12	7	12.7	11.5	12.5	11	11.8

## 4.2. 유니트공간 구성요소

유니트 공간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각 시설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그 분류의 기준을 정하였다.

유니트는 기본적으로 개인요양실, 화장실, 공동생활실, 주방, 개호서비스시설, 욕실, 기타서비스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에 대한 설명은 <표 6>과 같다.

조사대상 20개 시설의 구성은 개인요양실, 화장실, 공동생활실, 주방, 개호서비스시설, 욕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표 7>.

개인요양실은 기본적으로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발코니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해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임

&lt;표 6&gt; 유니트 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 정의

유니트구성	용어설명
개인 요양실	세면소 개인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Built-in 세면기
	발코니 개인실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테라스, 외부와의 급기와 조망에 응이하고, 개인휴게공간 혹은 회분과 같은 개인적인 취미활동 공간
화장실	개인화장실 개인실 내부에 설치되는 전용화장실
	공용화장실 2~3실 당 1개소 씩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공동공간을 통해 이용
공동 생활실	리빙공간 Sofa와 같은 안락한 형태의 가구가 설치된 담화, TV 시청을 위한 공간
	다ining공간 식사 및 담화공간 Dining chair & table로 계획된 공간
주방	미니주방 주방구성의 최소단위, 간단한 조리 가능
	대면식주방 간단한 조리가 가능. 조리하는 직원과 의사소통이 용이한 Bar 형태의 주방.
	다이닝주방 가정의 일반주방과 같은 조리공간, dining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
개호 서비스 시설	개호스테이션 유니트 내에 설치하는 소규모 스테이션. 유니트에 대한 개호를 직접적으로 담당
	개호직원실 중앙집중형, 층당 혹은 시설당 설치하는 대규모 스테이션 혹은 실형 공간. 각 유니트에서는 개호직원이 함께 생활을 하고 중앙의 관리를 받는 형식
욕실	개인사위 개인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간단한 사위가 가능
	공용욕실 층당, 유니트당 혹은 시설당 1~2개소 설치되어 있는 공동욕실, 기능에 따라 일반욕실과 특수욕실로 나뉘고, 여건에 따라 외부 노천탕의 계획도 가능
기타시설	각 시설별로 특이하게 유니트 내부에 추가되는 시설

에도 불구하고 조망이 좋은 곳 이외에는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시설이 공용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용화장실의 경우에는 2~3인당 1개소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동생활실은 소파를 이용한 리빙공간보다는 식탁과 의자를 이용한 다이닝공간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빙시설보다 다이닝시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방은 보통 일반 가정의 주방과 유사한 형태인 다이닝주방이 가장 높은 비율로 계획되고 있다. 다이닝주방은 다이닝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개호직원이 조리를 하면서도 다이닝공간의 입소자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호서비스시설의 경우 중앙 집중형 관리방식의 개호직원은 보통 입소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실에서 생활하고 대규모 중앙스테이션을 통해 인력을 배정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욕실은 모든 시설이 공용욕실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통 개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목욕을 위해 개호직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실보다는 공용 욕실이 선호된다고 보여 진다.

기타 유니트 내부 시설로는 흡연실, 다실, 공동테라스, 산책로, 상담실, 게스트룸, 기능훈련실, 뱃마루, 중정 등의 공간들이 있다. 흡연실과 다실은 보통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되며,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써의 의미가 크다. 공동테라스나 뱃마루는 산이 조망되는 공간이나 암뜰에 연결되는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하여 노인들이 자연경관을 보거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와 가족, 방문객의 만남이 편리하도록 방문객의 숙박을 위한 게스트룸이나 방문객과의 면담실, 상담실 등이 갖추어진 시설도 있다. 기능훈련실은 다이닝공간과 리빙공간의 중간, 혹은 넓은 복도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물리치료 및 걷기 운동 등의 기초체력훈련이 가능한 기구나 설비를 설치한 공간이다. 많은 시설들이 급기나 환기를 위해 중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런 공간은 입주자들의 조경조망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직접 중정과 맞닿아 있는

<표 7> 시설별 유니트 공간구성 요소

유니트구성		ふれ あい (후레 아이)	土浦晴 山苑 (초치우 라하레 아마원)	ぬくもり の里 あおえ (매구모리 노리 아오에)	衣笠 ホーム (키메가 사홍)	慶和莊 (케이오 소우)	おお ぞら (오오 조라)	清心苑 (케이 신엔)	ビハ"-ラ 十條 (비바라 쥬오우)	チュ"-リップ (츄리프)	ソルメ ゾン (소루 메종)	花 ハウス (하나하 우스)	いなほ の郷 (이나호 노쿄우)	ロ"-ズ ガ"-デ ン (로즈 가든)	いちご (이찌고)	ふるる (후루루)	明盡苑 (메이 진엔)	のぞみ (노조미)	ボプラ (포풀라)	
개인요양실		세면소	●	●	●	●			●	●	●	●		●	●	●	●	●	●	
발코니					●	●		●			●		●							
화장실		개인화장실			●			●	●	●	●	●		●						
공동생활실		공용화장실	●	●	●	●	●	●	●				●	●	●	●	●	●	●	
리빙공간		●	●	●	●	●		●	●		●	●	●	●	●	●	●	●	●	
다이닝공간		●	●	●	●	●	●	●	●	●	●	●	●	●	●	●	●	●	●	
미니주방		●				●					●									
대면식주방								●					●					●		
다이닝주방		●	●	●			●		●		●	●	●	●	●	●	●	●	●	
개호서비스시설		개호스테이션	●			●	●	●				●	●			●				
개호직원실		●		●				●	●			●	●	●	●	●	●	●	●	
욕실		개인샤워			●		●		●		●	●	●	●	●	●	●	●	●	
공용욕실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흡연실, 담실, 공용발코니, 산책로, 상담실, 게스트룸, 기능훈련실, 빗마루, 중정공간

유니트의 경우에는 중정 내부에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 4.3. 유니트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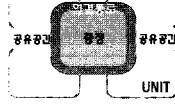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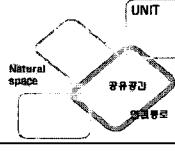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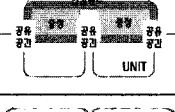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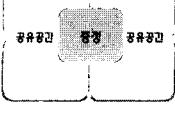
하나의 거주단위인 유니트는 다른 이웃의 유니트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분 방식에 따라 조사대상 20개소의 배치 유형을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연결이나 독립의 매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를 통해 회랑분리형, 공용공간분리형, 회랑연결형, 공용공간연결형으로 재분류하였다<표 8>.

독립형은 각각의 유니트가 독립된 개체로써 별도의 현관을 가진 형태이며, 유니트간의 연결은 통로나 기능회복실, 공용욕실과 같은 공유시설을 통해서 가능하다. 조사대상시설의 72%가 이러한 독립된 유니트로 계획되었다. 이는 노인들에게 있어 하

나의 유니트가 완결된 집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니트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에서 각 유니트마다의 특성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거주구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지성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유니트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거주공간을 혼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영역의 구분을 위해 유니트간의 독립성이 매우 효과적이다.

연계형은 각 유니트가 자연스럽게 공유공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독립된 현관이나 벽체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색채나 공간의 크기 등을 통해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연계형 배치의 경우에는 유니트와 유니트간의 공유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런 공간을 통해 다른 유니트의 입주이웃에 까지 더 폭넓은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공유공간이 되는 시설로는 흡연실, 담화실, 휴게실과 같은 담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

<표 8> 유니트 연결의 유형 및 특징

Unit간 관계	Diagram	정의	해당시설	빈도(%)	평균면적	연결시설의 기능	
독립형	회랑분리형		중앙의 중정이나 공용시설을 중심으로 연결통로가 회랑형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통로를 중심으로 각각의 유니트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연결	ふれあい(후레아이) ぬくもりの里 あおえ(매구모리노리 아오에) 衣笠ホーム(키메사가홍) ビハ"-ラ十條(비바라쥬오우) いちご(이찌고) ふるる(후루루) 明盡苑(메이진엔)	7(39)	272	통로 기능회복실 로비 Hall 교류홀 흡연실
	공용공간 분리형		중앙의 홀이나 로비를 중심으로 각 유니트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계획	土浦晴山苑(초치우라하레아마원) 慶和莊(케이오소우) おおぞら(오오조라) チュ"-リップ(츄리프) ソルメゾン(소루메종) いなほの郷(이나호노쿄우)	6(33)	270	
연계형	회랑연결형		독립된 현관이 없는 오픈된 유니트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 각 유니트 사이에는 공유공간이 작은 규모로 위치	清心苑(케이신엔) のぞみ(노조미)	2(11)	246	흡연실 휴게실 담화실 중앙통로 기능회복실
	공용공간 연결형		'L'자 형태의 공동생활실이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유니트는 오픈된 형태로 계획, 유니트의 구분을 공간의 풍을 줄이거나 개별유니트의 공동생활실의 배치를 통해 인지시킴	花ハウス(하나하우스) ロ"-ズガ"-デン(로즈가든) ボプラ(포풀라)	3(17)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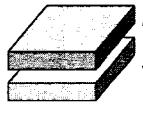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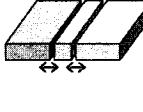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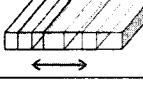
간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인력배치에 있어서 열린 공간방식은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나 간호가 용이하며, 특히 야간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조사대상시설의 29% 정도가 연계형 유니트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 4.4. 유니트와 공용공간과의 관계

특별양호노인홈의 생활공간은 <표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적, 준개인적, 준공용적, 공용적 공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유니트와 기타 공용시설(지역교류센터, 테이서비스시설 등)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시설의 전체적인 공간구성과 매스적인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각 생활공간은 <표 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고, 공간성격에 따른 구성은 크게 수직분리형, 단계적분리형, 혼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 대상 시설 중 다수의 시설이 생활공간들을 수직으로 분리하고 있다. 다른 형태와 비교하여 고층집약적으로 계획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며, 거주자들의 개인적 혹은 준개인적 공간의 연계공간을 고려함으로써 거주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는 도움이 된다. 혼재형은 같은 층에 공용공간과 유니트공간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거주자와 외부 시설 이용자는 유니트의 외부공간 어디에서나 대면이 가능하여 각각의 공간들이 다른 영역의 성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므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는 수직분리형과 비교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하겠다. 단계적분리형은 수직분리형과 혼재형의 절충된 형태로써 유니트공간과 공용공간 사이에 준공용공간의 성격을 같은 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유니트공간과 공용공간을 연계 혹은 단절시키는 절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2층 규모의 저층시설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혼재형과 마찬가지로 한 층에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어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표 9> 유니트와 공용공간과의 관계 유형 및 특징

유니트구성	용어설명	특징	해당시설
수직 분리형	 수직적으로 유니트와 공용공간(지역시설) 등과 분리된 형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보호/ 고층집약/ 외부와의 교류가 어렵다	메구로리노리아오에/ 오오조라/ 비바라주조우/ 츄리파/ 소루메종/ 하나하우스/ 이나호노쿄우/ 로즈가든/ 이찌고/ 후루루/ 포풀리
단계적 분리형	 같은 층 내에 다른 성격의 공간을 계획하나 생활단위(unit)와 공용공간 사이에 buffer 역할을 하는 준공용공간(상담실, 담화실 등)을 계획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보호에 용이/ 준공용공간의 활용도 증가/ 외부와의 교류시도에 용이	키메사가하/ 케이오우/ 노조미
혼재형	 공용시설과 생활단위가 특별히 분리되지 않고 같은 층에 공존	서비스제공에 용이/ 외부와의 교류가 원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후레아이/ 츠치우라하에아미/ 케이신엔/ 메이진엔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발보험 도입 이후 노인 요양시설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이후의 복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유니트케어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호보험의 도입은 노인들의 개호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고, 동시에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기존 시설의 불합리성이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본에서는 2002년 노인복지시설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유니트케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형 특별노인홈을 도입하게 되었다. 전개설화, 유니트케어를 통해 요양시설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입주자간의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더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니트케어란 시설의 요양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을 하나의 거주단위로 하여 소인원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며, 요양실은 1인실을 기본으로 한다.

2002년 계획이 시작된 신형특별양호노인홈은 2004년 이후 그 체계가 정립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설은 주로 도심이나 도심 근교에 위치하여 지역밀착형 시설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6~10인이 생활하는 유니트를 기본으로 하여 유니트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18개소를 통해 본 유니트는 개인요양실, 화장실, 공동생활실, 주방, 개호서비스시설, 욕실 등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기타 유니트 내부 시설로는 흡연실, 다실, 공용테라스, 산책로, 상담실, 게스트룸, 기능훈련실, 헛마루, 중정공간과 같이 기능성을 가진 공간들이 계획된다. 개인요양실의 평균면적은 16m<sup>2</sup>로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생활실 및 욕실 등의 기타부대시설의 1인당 평균면적은 11m<sup>2</sup>로 계획되고 있다.

하나의 거주단위인 유니트는 다른 이웃의 유니트와 구분된 독립형과 개방된 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매개공간의 성격에 따라 회랑분리형, 공용공간분리형, 회랑연결형, 공용공간연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공간은 공간의 구성형식에 따라 수직분리형, 단계적분리형, 혼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요양시설의 대지적인 요건, 경제적인 요건, 생활공간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의 요양시설은 대규모로 계획되고 교외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인실이 대부분이고 부족한 공용공간으로 인해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본과 같이 질적인 발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에서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계획 시 유니트케어와 개설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노지화, 일본노인보건시설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개호보험 실시이후 입, 퇴소현상을 통해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3호, 2005.3
2. 문성현,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대과정과 한국사회로의 시사점,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논문집, vol24, 2004.
3. 문창호, 최근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0권 6호 통권188호, 2004.6.
4.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노인수발 건강보험제도 정의 및 의의, <http://www.longtermcare.or.kr>.
5. 선우덕, 일본장기요양보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5.
6. 염기욱·박인아, 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4년간의 평가와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vol 21, 2005.4.
7. 이민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프로그램 수행공간 계획지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4호, 2005.
8.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동경부 23구내 시설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06.2.
9. 이특구·김석준, 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2006.3.
10. 全國新型特養推進協議會推進協, <http://suishinkyo.net>.
11. 医療經濟研究機構, 介護保険施設における個室化とユニットケアに関する研究報告書, 2001.
12. 医療經濟研究機構, 普及期における介護保険施設の個室化とユニットケアに関する研究報告書, 2002.
13. 日本厚生労働省老健局, 全國介護保険·高齢者保健福祉担当課長會議, 2002.
14. 日本厚生労働省老健局, 介護制度改革關聯 法案の概要, 2006.
15. 장병원, 고령화 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방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7권 6호, 2003.6.
16. 조영훈, 일본 공적개호보험 형성의 사회적 배경, 한국사회학 제39집 5호, 2005.
17. 중앙일보, 한국의 고령화 속도 더 빠른데..., 2006.09.19
18. 최영미·양내원, 일본 노인복지시설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동경 및 근교지역의 특양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2호, 2003.12.

<접수 : 2007. 2. 22>